



표준 관리	적용 범위	표준 책임팀	적용 일자	검토 주기
	공통	HSE팀	2024.05.20	1회/2년
목적	이 지침은 경창산업(주) (이하 "회사"라 한다)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.			
업무범위	본 규정은 당사의 활동,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관리,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적용된다.			
성과관리	관리지표	산출기준	주기	비고
제·개정 사유	ISO 45001 &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			



1. 업무 FLOW CHART

해당사항 없음

2. 용어의 정의

NO	용어	정의	비고
1	수질오염물질	(총 58종 :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 2])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.	
2	특정수질 유해물질	(총 32종 :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 3]) 사람의 건강, 재산이나 동식물에 직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.	
3	폐수	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	
4	상하수도	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물과 오염된 물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 는 빗물·지하수를 말한다.	
5	폐수 배출시설	(총 82개 시설 :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 4])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 한다.	
6	수질오염 방지시설	(총 5개 시설 :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 5])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을 말한다	
7	배출허용기준	국가의 목표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공공하/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 한계 기준	
8	제 1 종 사업장	폐수배출량이 2,000m ³ /일 이상인 사업장	



9	제2종 사업장	폐수배출량이 700m ³ /일 이상, 2,000m ³ /일 미만인 사업장	
10	제3종 사업장	폐수배출량이 200m ³ /일 이상, 700m ³ /일 미만인 사업장	
11	제4종 사업장	폐수배출량이 50m ³ /일 이상, 200m ³ /일 미만인 사업장	
12	제5종 사업장	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 시설	
13	환경기술인	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거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기술 인력	

3. 책임과 권한

3.1 HSE 팀

- 1)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정보 검토 및 유관팀 전파
- 2) 물환경보전법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, 보고 및 관리
- 3) 배출, 방지시설 운영 모니터링
- 4) 법적선임자(환경기술인) 또는 담당자 선임 검토 및 보고, 기록관리
- 5)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적 선임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운영관리
- 6) 수질오염물질 적법처리 유무 검증 및 배출허용/운영기준 준수 점검
- 7) 수질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인/허가 관리

3.2 환경기술인

- 1) 수질 방지시설 가동, 운영 관리 및 이상발생시 보수 관리
- 2)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(0H-0102-01) 작성 및 유지관리
- 3) 생산공정의 수질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모니터링
- 4) 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자 선정 및 위탁 측정대행업체측정 결과 검토 및 기록 유지관리
- 5) 전국오염원조사, 정부보고 오염물질 기록제출 등 업무

4. 상세 업무 절차

4.1 배출시설·방지시설 설치

공사주관팀은 설치시 HSE팀에 사전통보하고 배출·방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.



- (1) 배출시설 · 방지시설 설치(변경) 내역
- (2) 설치/변경사유 및 기대효과
- (3) 계획된 방지시설 형태 및 예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 기술적 자료
- (4) 설치/변경 계획일정 및 기타 참고사항
- (5) 예상 투자비용(직간접 공사비, 인허가 비용 등)
- (6) 배출시설 · 방지시설 사양서, Lay-Out (관련 도면 포함)
- (7) 사용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, 가동시간

4.2 운전 및 유지보수

환경기술인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(별첨1) 및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(별첨2)을 만족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상태로 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 전량 위탁 처리 및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제외한다.

4.3 배출 허용기준의 강화

- 1) HSE팀은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시 개선안을 작성하여 해당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개선안을 통보받은 해당팀은 공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3) 다만 전량 위탁처리 및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제외한다.

4.4 배출시설 · 방지시설 설치(변경) 허가 · 신고

- 1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(변경)하고자 할 경우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HSE팀은 외부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(변경)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3) 배출시설 · 방지시설(변경)변경 필요시 HSE팀에 내용을 전달하여 배출 · 방지시설 목록 업데이트 및 인허가 업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, HSE팀은 적합한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4.5 측정 및 분석

HSE팀은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 측정주기를 선정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.

4.6 수질오염 배출기준 초과시

- 1) 측정 및 분석 결과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(별첨1) 및 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(별첨2)을 초과시 HSE팀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.
- 2)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HSE팀은 해당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여 해당기관(달서구,달성군,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)과 협의 하여야 한다



3) 본 업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다

4.7 상하수도 및 우수관리

4.7.1 상하수도 관리

- 1) 법적선임자(환경기술인)또는 담당자/개인하수처리 관리자는 년1회 이상 위탁 업체를 선정 하여 오수 정화조 청소를 관리해야 한다. (단, 공공 하/폐수 처리장 이송 사업장은 제외)
- 2) 법적선임자(환경기술인) 또는 담당자/개인하수처리 관리자는 수시로 오수 배출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해야 하며, 문제점이 발견되면 HSE팀에 통보하여 토양 또는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
4.7.2 우수 관리

- 1) 유해·위험물질을 사용하는 부서는 우수 배수로를 통해 오염물질이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.
- 2) 원/부재료 및 제품의 적재, 하역 및 운반시 오염물질의 누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및 관리하도록 해야한다.
- 3) HSE,노사상생팀은 정기적으로 배수로 및 관리구역을 점검하여 배수로를 통한 오염물질 유출을 확인하고 예방하여야 한다.
- 4) HSE팀은 폐수 및 위험물질의 우수 유출시 즉각 방재조치 해야 하며, 해당기관(달서구,달성군, 산업단지 관리공단)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4.8 법적 선임자(환경기술인) 또는 담당자 임명 및 교육

4.8.1 환경기술인 임명

HSE팀은 배출·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[별표]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다.

- (1)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: 배출·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선임
- (2) 환경기술인을 변경 임명하는 경우 :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선임

[표 1] 환경기술인 자격기준

사업장 구분	환경기술인 자격기준
제1종	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
제2종	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
제3종	수질환경산업기사·환경기능사·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



제4종 제5종	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·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
예외조항	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·제5종 사업장(10m³/일 이하 폐수 배출 사업장 제외)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
	공동방지시설의 경우, 폐수량이 제4종·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

4.8.2 환경기술인 관리사항

- 1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2)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
- 3)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항
- 4)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·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
4.8.3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(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)

환경기술인은 아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HSE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표 2]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

대상	교육주기	교육기간
· 환경기술인 (폐수배출·방지시설 운영관리) ·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	· 최초 :환경기술인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· 보수 :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	· 4일(28시간) 이내 법기준에 따른 교육 시간 준수 (전문/일반/면제) ·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가능

5. 법적,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

NO	요구사항	비고
1	물환경보전법	
2	수도법	
3	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4.2.2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파악	



경강산업

환경안전보건관리규정

표준번호

KCS-0H-0102

수질환경관리지침

개정일자(No)

2024.05.20(0)

6. 기록 및 양식

NO	기록 및 양식	양식번호	보존년한	비고
1	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	0H-0102-01	1년	

7. 개정이력

NO	일자	개정내용
0	2024.05.20	ISO 45001 &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